경기도 고시 제 2022 - 10 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완화를 통해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이라 한다) : 12개소 13.06제곱킬로미터

연 번	위 치	면 적(㎡)	비 고
1	일산동구 풍동택지개발지구	25,613.6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시설용지)	고양시 고시 2006-100호 (2006.11.30.)
2	일산동구 마두동 802-1외 4필지	32,917	고양시 고시 2006-110호 (2006.12.29.)

3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2택지개발지구	55,457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산업용지)	고양시 고시 2007-256호 (2007.5.7.)
4	덕양구 행신(2)택지개발지구	751,334.8	고양시 고시 2007-343호 (2007.10.4.)
5	덕양구 로데오거리	631,145	고양시 고시 2008-206호 (2008.12.19.)
6	삼송택지개발지구	5,068.759	
7	지축택지개발지구	1,174,600	
8	향동택지개발지구	1,178,377	
9	덕이택지개발지구	658,672.1	
10	식사택지개발지구	988,976	
11	덕양구 행신동(충장로 일원)	35,592	고양시 고시 2010-26호 (2010.2.5.)
12	덕양구 원흥,도내,용두동 일원	1,287,160	
13	일산동구 마두동 783외 3필지	5,054	
14	덕양구 로데오거리	화정동 1000-5번지외 8필지	고양시 고시 2010-47호 (2010.3.9.)
15	일산동구 중앙로 일원	장항동 785번지외 4필지	
16	일산서구 중앙로 일원	대화동 2222-1번지외 1필지	
17	덕양구 성사동 726외 7필지	13,425.36	고양시 고시 2011-103호 (2011.6.27.)
18	일산동구 풍동 562-8번지 외71필지(애니골)	93,403 (풍동 애니골)	경기도 고시 제2017-78호 (2017.5.23.)
19	덕양구 화정동 909-1	4,015.31 (대경프라자 Ⅰ)	
20	덕양구 행신동 945-1	4,204.07 (능곡삼성프라자)	
21	덕양구 행신동 1081-2	3,826.75 (월드타워)	
22	일산동구 백석동 1135	313.92 (백송6단지 대우벽산상가)	
23	일산동구 마두동 757	817.2 (강촌1단지 동아상가)	
24	일산동구 마두동 717	2,284.08 (백마5단지 쌍용한성상가)	
25	일산동구 장항동 875	829.44 (호수4단지 LG롯데상가)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지번 : “별지1” 참조

2. 주요도로변 : 5.9킬로미터(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 또는 대지)

연 번	도로명	기 점	종 점	연 장(㎞)	비 고
1	중앙로	고양종합 운동장사거리	백마주유소 사거리	5.9	2008-206호 (2008.12.19.)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 “별지1” 참조

3. 특정구역 안에서 표시방법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1조제4항제2호의 별표 1의 사업장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벽면 이용 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굽은 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벽면 이용 간판에 한정하여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약국은 벽면 이용 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 표시내용은 상품명 ·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⑤ 법령,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과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경관계획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⑥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설치틀)을 설치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3층 이하(5층 이상 6층 이하 건물은 4층까지, 7층 이상 건물은 5층까지)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의 크기는 가로 10미터 이내, 세로 60센티미터 이내(4층 이상 5층 이하인 경우 65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며, 업소의 가로 폭과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100분의 8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베이스 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로는 업소의 가로 폭 이내, 세로는 10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 사이의 벽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주출입구의 캐노피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을 표시하지 않는다.
4. 동일건물 내의 간판들은 크기나 위치, 형태, 색상이 조화롭게 표시되어야 하며, 문자는 표시공간을 꽉 채우지 않고 100분의 20 이상의 여백을 두어 표기한다.
5. 색채는 설치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고, 고채도 원색은 고양시 경관계획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의 색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6. 재미있고 다양한 입체형태의 간판을 권장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한다.

   예시도) 별지 2 와 같다.

② 건물 최상단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4층 이상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1면(건물명은 3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2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면에 1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4층 이상 건축물 최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3. 간판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5층 이하 건축물은 1미터 이하, 6층 이상 건축물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나.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는 5층 이하 건축물은 1미터 이하, 6층 이상 건축물은 2미터 이하로 하며,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8미터 이내로 한다.

예시도) 별지 2와 같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며,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을 경우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80센티미터(게시틀 포함 100센티미터) 이하로 돌출할 수 있으며, 세로크기는 70센티미터 이내,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80센티미터 x 70센티미터 또는 70센티미터 x 80센티미터로 선택 설치 가능)
3.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돌출 폭을 일치시키고 건물의 벽면에 게시틀을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 하도록 제작한다.
4. 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한면 폭이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양측 단에 표시할 수 있다.

예시도) 별지 2와 같다.

②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1개 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2. 해당 건물부지 내에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3.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4.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최대 2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바깥쪽 끝 부분이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도) 별지 2와 같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별 업소형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건물의 업소 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 내에 지주 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주 이용 간판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2개 업소 이상에 한정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의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3미터 이하,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4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④ 간판을 고정하는 구조물이나 볼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제7조(옥상간판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8조(전기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주거지역(아파트, 단독주택지 등)에 면하여 설치할 수 없고,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②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 등 광원을 직접 노출시키는 방식, 점멸방식,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LED(Light Emitting Diode)로 표현하는 판류형 문자는 LED 판의 7분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문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위, 아래 8분의 1의 여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LED에 삽입되는 문자의 색상은 2도의 단색을 원칙으로 한다.

⑤ 베이스 판에는 전기를 이용한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베이스 판 위에 설치하는 입체형 간판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제9조(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간판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제4조의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을 따

르되, 가로크기를 차양면 가로범위의 100분의 80 이내, 세로크기를 최대 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호는 차양면 부분에 정유사 명칭과 함께 쓰며, 차양면의 각 면을 1개로 보고, 각 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③ 외벽 면에 노출되는 업소를 상징하는 도장 등의 색상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물 입면적의 3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지주 이용 간판은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캐노피)로부터 6미터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고, 1면의 최대면적이 4제곱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최소 5미터 이상, 최대 9미터 이내여야 한다.

⑤ 조명은 차양면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판형 전체에 할 수 없고, 브랜드 및 상호 부분에만 하여야 하며, 점멸방식으로 할 수 없고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지정게시대에 한정하여 게시하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건축물의 벽면 등에 끈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현수막에 현수막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시도) 별지 2와 같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06-100호, 2006. 11.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등은 풍동지구단위계획,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06-110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07-254호, 2007. 5. 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07-343호, 2007. 10.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조례에 의거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등은 풍동지구단위계획,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08-206호, 2008. 12. 19.>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고시【고양시 고시 제 2006-11호(2006. 02. 09), 고양시 고시 제 2006-72호(2006. 07. 31), 고양시 고시 제 2007-255호(2007. 05. 07), 】는 폐지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축·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및 기존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으로 단순 도안만을 변경하는 광고물과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광고물, 불

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2008. 6. 1 ~ 12. 31)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기존 허가·신고 된 단독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10-26호, 2010. 2. 5.>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축 · 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및 기존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1회 연장 후 현행 고시를 적용한다.

다.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10-47호, 2010. 3. 9.>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축 · 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및 기존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1회 연장 후 현행 고시를 적용한다.

다.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고양시 고시 제2011-103호, 2011. 6. 27.>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고시【고양시 고시 제 2006-11호(2006. 02. 09), 고양시 고시 제 2006-72호(2006. 07. 31), 고양시 고시 제 2007-255호(2007. 05. 07), 】는 폐지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축·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및 기존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고양시 고시 2008-206호 부칙 '다' 항 '2호' 삭제)

3) 기존 허가·신고 된 단독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다.

부 칙 <경기도 고시 제2017-78호, 2017.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고양시 고시 제2006-100호(2006.11.30.), 고양시 고시 제2006-110호(2006.12.29.),고양시 고시 제2007-254호(2007.05.07.),고양시 고시 제2007-256호(2007.05.07.),고양시 고시 제2007-343호(2007.10.04.),고양시 고시 제2008-206호(2008.12.19.),고양시 고시 제2010-26호(2010.02.05.),고양시 고시 제2010-47호(2010.03.09.),고양시 고시 제2011-103호(2011.06.27.)】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 1회 연장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78호(2017.05.23.)】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 1회 연장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1]

□ 특정구역(도시지역)의 표시

1. 전체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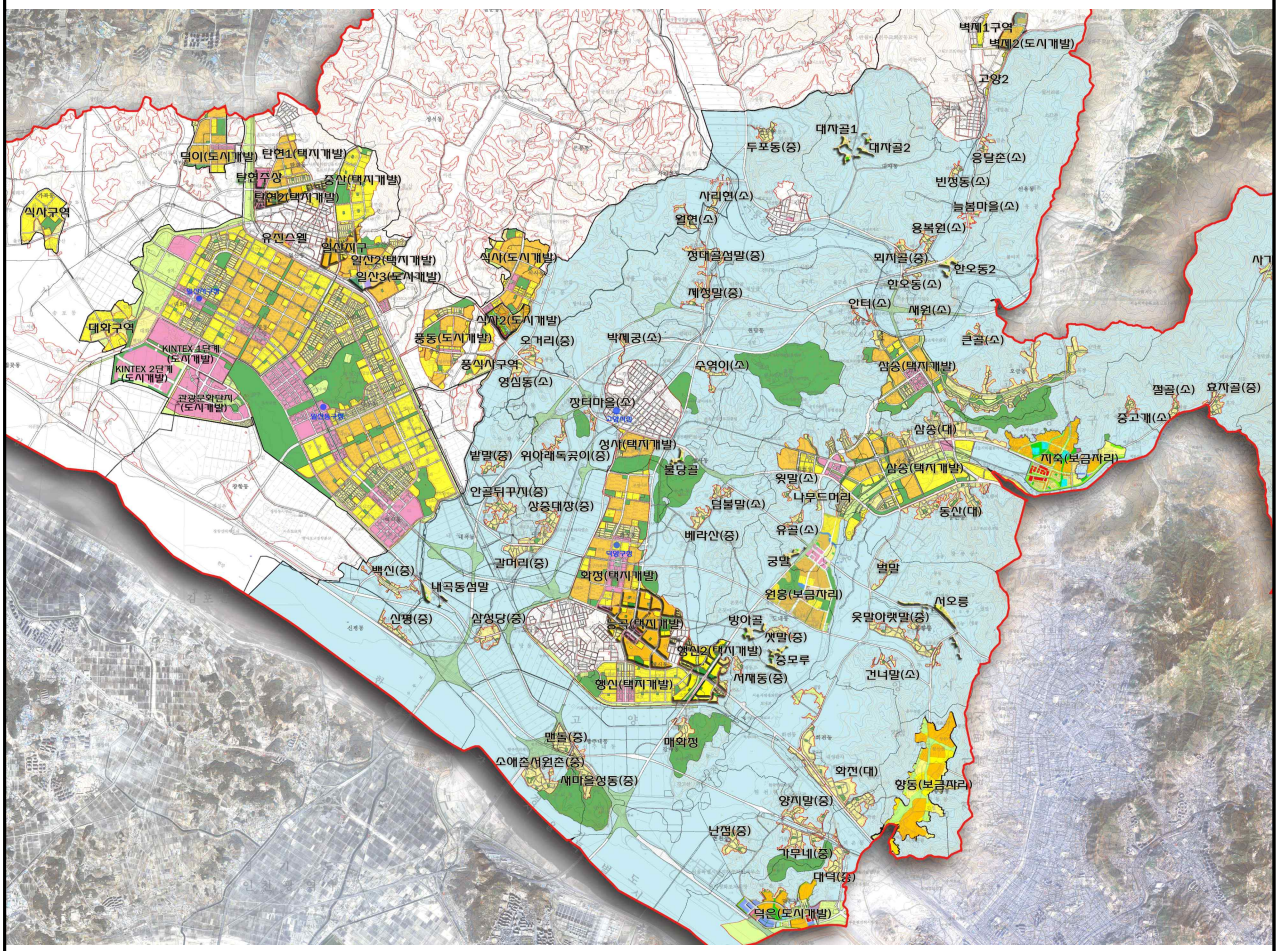

특정구역 - 도시지역		
구역명	지정구역	
	면적(㎢)	연장(km)
풍동택지개발지구	0.026	
일산2택지개발지구	0.055	
행신2택지개발지구	0.751	
삼송택지개발지구	5.068	
지축택지개발지구	1.175	
향동택지개발지구	1.178	
덕이도시개발지구	0.658	

특정구역 - 도시지역		
구역명	지정구역	
	면적(㎢)	연장(km)
식사도시개발지구	0.989	
일산동.서구 중앙로		5.9
덕양구 로데오거리	0.19	
원흥,도내,용두동일원	1.287	
풍동 애니골	0.093	
신도시 상가지역	1.593	

2. 특정구역 지번현황

동 명	특정구역 지번
덕양구 화정동	964, 964-1, 964-2, 964-3, 964-4, 965, 965-1, 966, 966-1, 966-2, 966-3, 967, 967-1, 967-2, 967-3, 968, 968-1, 968-2, 968-3, 968-4, 969, 969-1, 970, 970-1, 970-2, 970-3, 970-4, 970-5, 972, 973, 974, 975, 975-1, 975-2, 975-3, 975-4, 976, 977, 977-1, 978, 978-1, 978-2, 979, 979-1, 979-2, 980, 980-1, 980-2, 981, 981-1, 981-2, 982, 983, 983-1, 984, 984-1, 984-2, 984-3, 984-4, 984-6, 984-7, 984-8, 984-9, 986, 986-1, 986-2, 986-5, 986-6, 986-8, 986-9, 1000, 1000-1, 1000-2, 1000-3, 1000-4, 1000-5, 1000-6, 1000-7, 1000-8, 1000-9, 1002, 1002-1, 1002-2, 1002-3, 1002-4, 1002-5, 1002-6, 1002-7, 1002-8, 1148, 1148-1,909-1
덕양구 성사동	726
덕양구 행신동	706, 706-1, 706-2, 707, 707-1, 707-2, 707-3, 707-4, 707-5, 714, 714-1, 714-2, 714-3, 714-4, 714-5, 714-6, 761, 761-1, 761-2, 761-3, 761-4, 761-5, 761-6, 762, 762-1, 762-2, 762-3, 762-4, 762-5, 766, 766-1, 766-2, 905, 945-1,1081-2
일산동구 백석동	1194, 1195, 1237, 1242, 1288-2, 1294, 1294-1, 1294-2, 1294-3, 1296, 1296-1, 1296-2, 1296-3, 1297-2, 1299, 1300, 1300-1, 1300-2, 1303, 1303-1, 1304, 1304-1, 1307, 1307-1, 1307-2, 1308, 1331, 1331-2, 1332, 1332-1, 1332-2, 1332-3, 1333, 1334, 1334-1, 1334-2, 1334-3, 1335, 1351,1135
일산동구 장항동	726, 726-1, 727, 727-1, 727-2, 72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5-1, 785-2, 785-3, 846, 847, 848, 848-1, 849, 849-1, 889, 890, 890-1,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3, 895, 896, 896-1, 896-2, 899, 902, 875
일산동구 마두동	719, 783, 787, 797-2, 798, 798-1, 798-3, 798-5, 798-6, 798-7, 801, 802-1, 805, 805-1, 806, 1010, 717, 757
일산서구 주엽동	15, 17, 18-2, 21, 21-1, 21-2, 21-3, 22, 29, 66-1, 71, 71-1, 71-2, 71-3, 72-2, 73, 75, 81, 83, 101, 102, 106, 106-1, 106-2, 106-3, 107, 109, 110, 110-1, 110-2, 110-3, 115, 120, 128, 136, 138,
일산서구 대화동	2198-2, 2199-2, 2202-2, 2203, 2203-1, 2203-2, 2203-3, 2205, 2205-1, 2220, 2220-1, 2220-2, 2221, 2222, 2222-1, 2222-2, 2222-3, 2223, 2239, 2240,
일산서구 탄현동	1479
일산서구 일산동	1048
풍동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25,613.6㎡)
일산2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55,457㎡)
삼송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5,068,759㎡)
지축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1,174,600㎡)
향동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1,178,377㎡)
덕이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658,672.1㎡)
식사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988,976㎡)
행신2택지 개발지구	(전체면적:751,334.8㎡)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전체면적:1,287,160㎡)
일산동구 풍동 562-8번지 외 71필지(애니골)	562-8, 562-13, 562-14, 562-18, 562-20, 562-33, 562-37, 573-4, 573-9, 573-10, 573-12, 573-15, 573-16, 573-24, 573-39, 573-42, 588-1, 589-1, 590-1, 590-2, 591-1, 591-2, 613-1, 613-3, 614-1, 614-4, 616-5, 617-12, 620, 620-2, 621-5, 622, 622-1, 622-5, 630, 631, 630-2, 630-3, 631-3, 632, 655-3, 616-5, 665, 665-1, 665-2, 665-3, 665-8, 665-10, 665-14, 665-16, 666, 667-1, 1097, 1105, 1119, 1120, 1121, 1121-1, 1122, 1122-2, 1127-22, 1127-24, 1127-25, 1127-26, 1127-27, 1127-28, 1127-39, 1152, 1153-1, 1153-4, 1155, 1158

3. 세부 도면(풍동 택지개발지구 : 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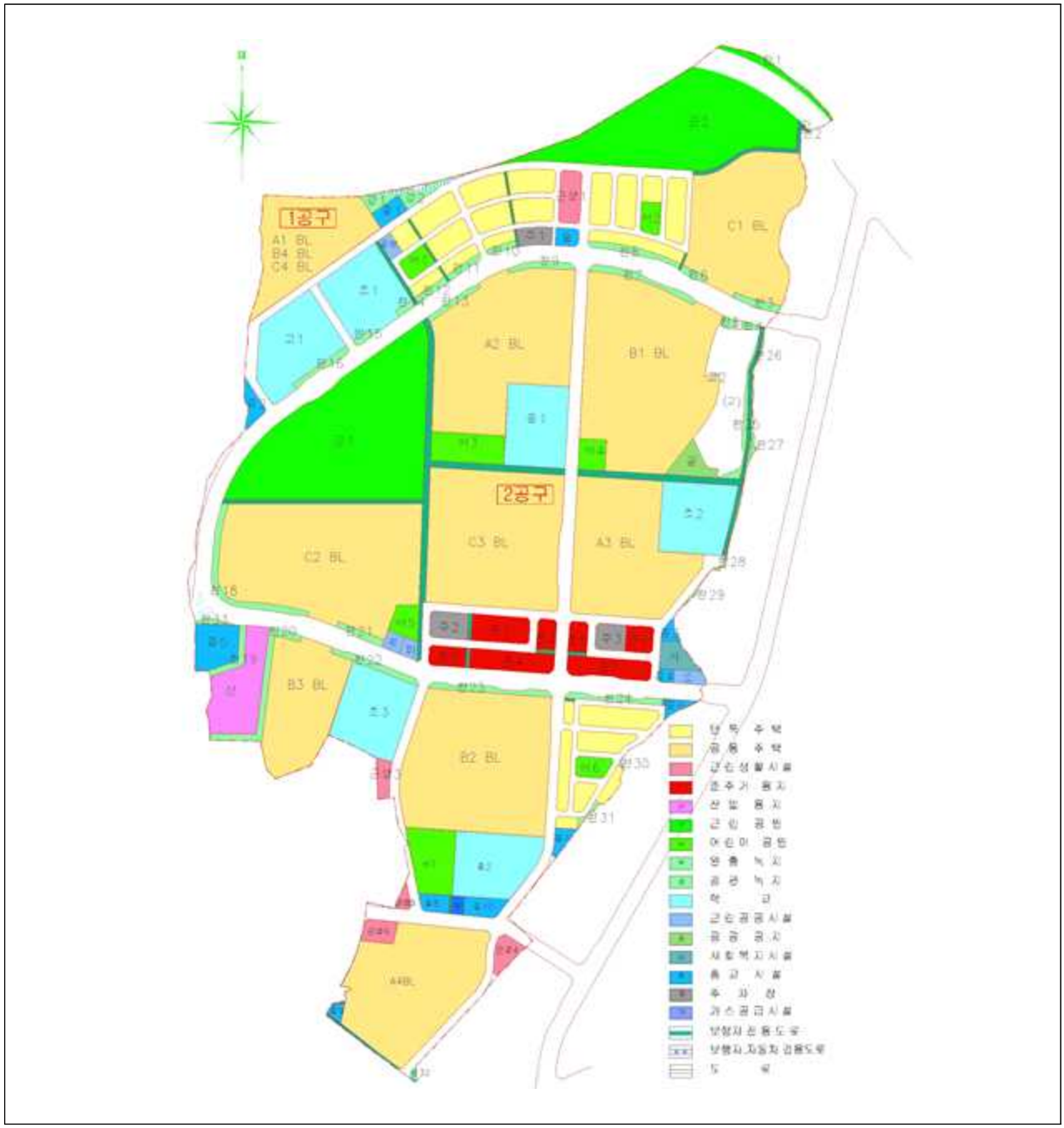

4. 세부 도면(일산2 택지개발지구 : 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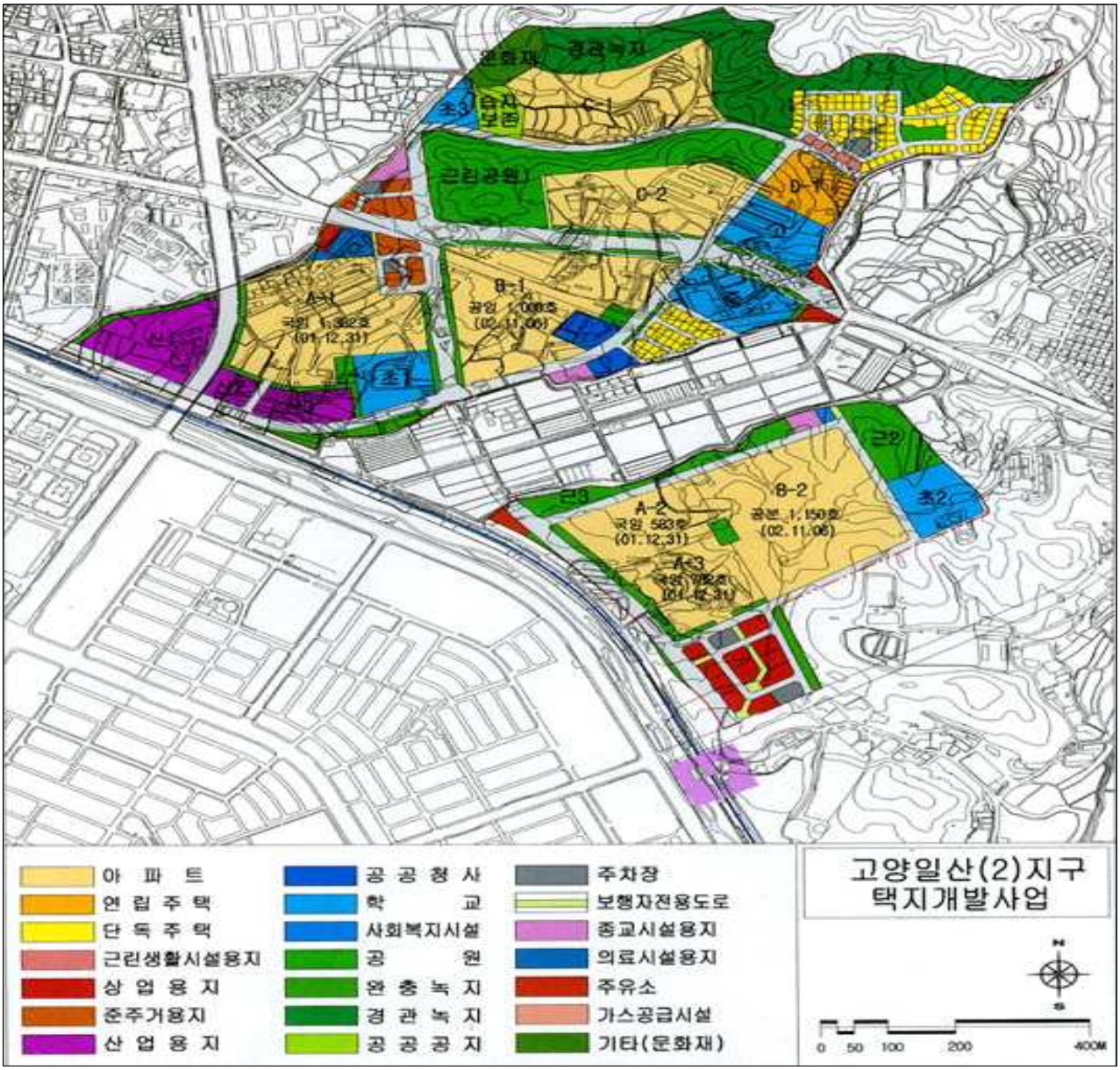

5. 세부 도면(삼송택지개발지구 : 5.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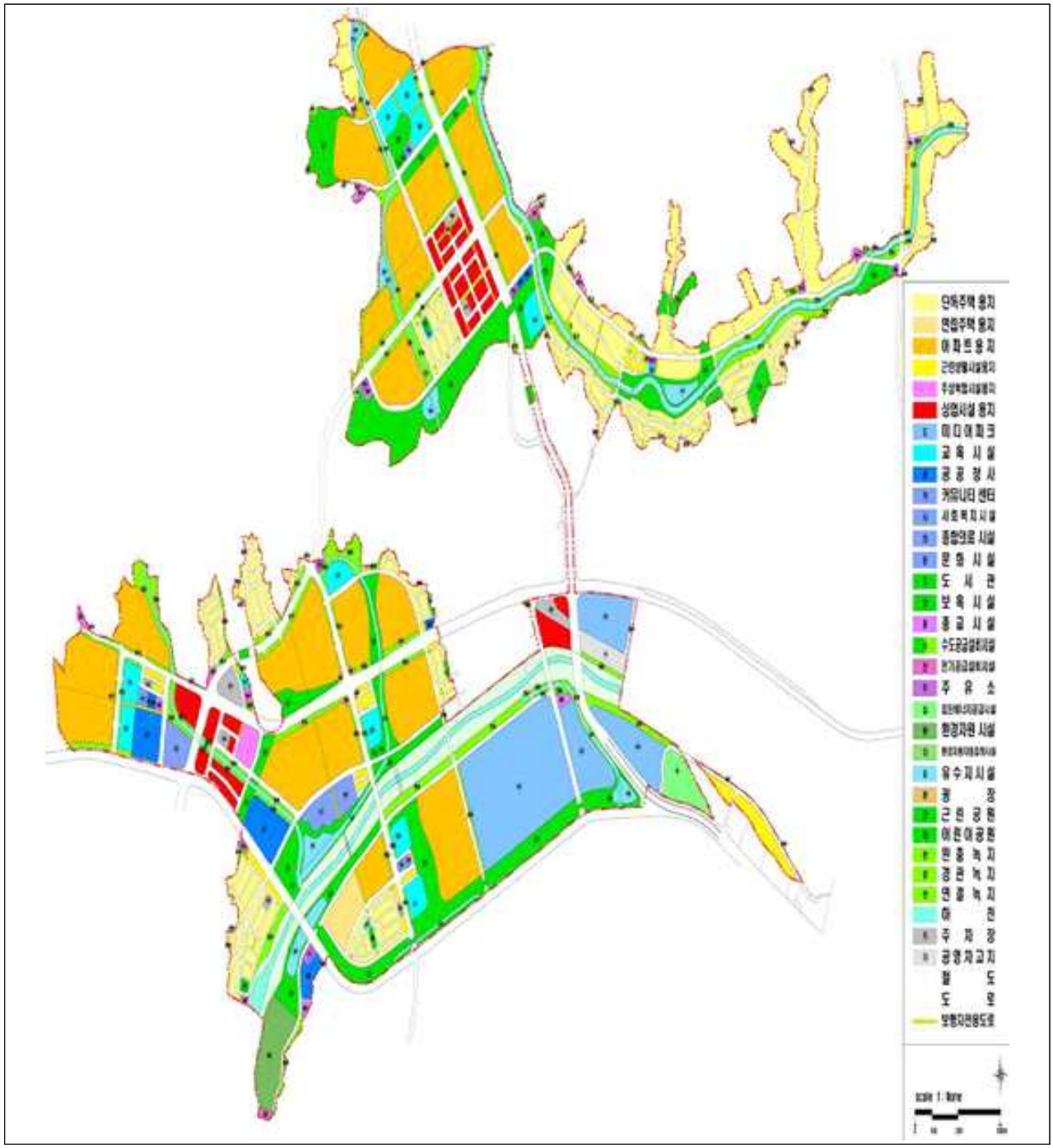

6. 세부 도면(지축택지개발지구 : 1.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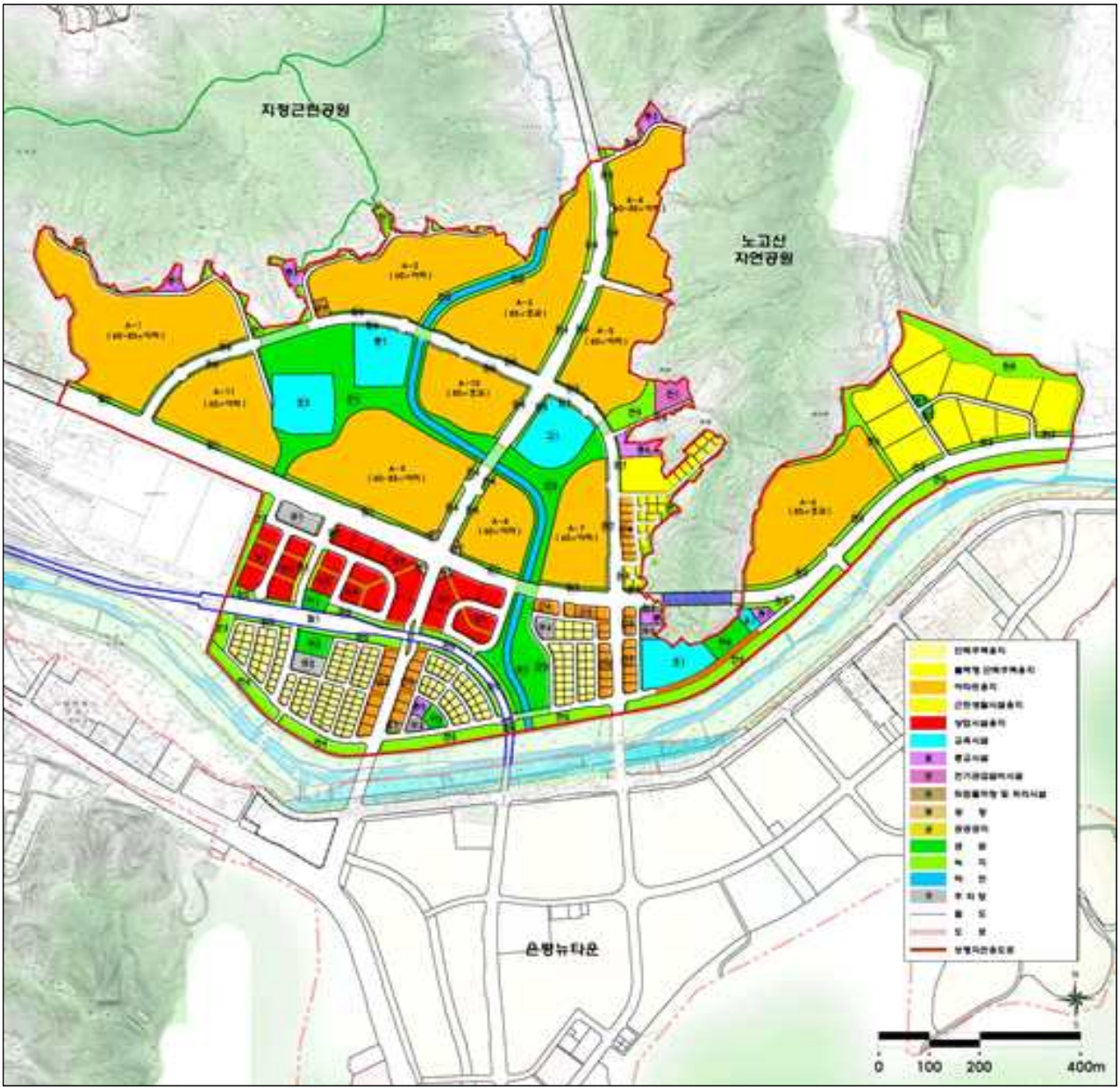

7. 세부 도면(향동택지개발지구 :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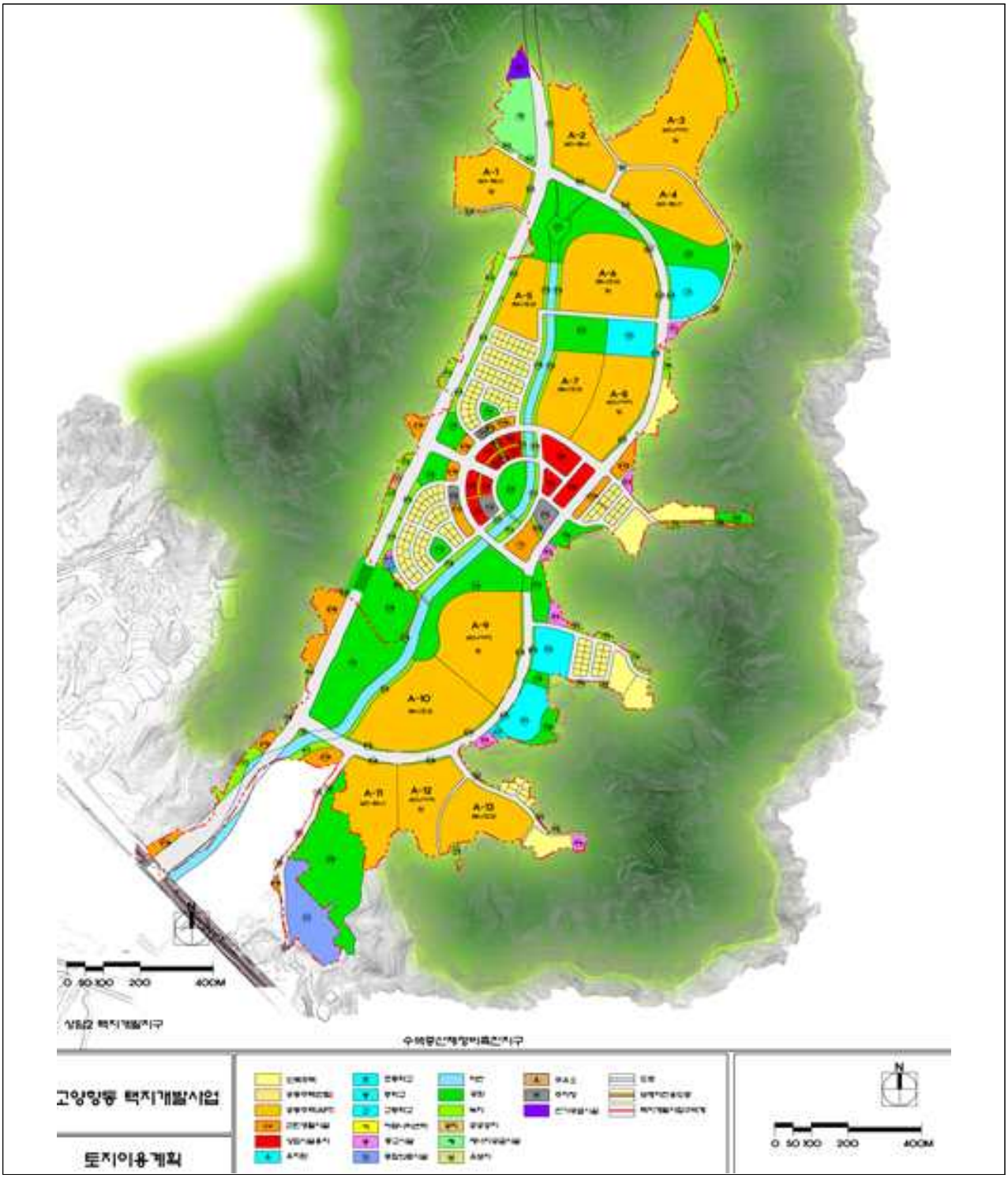

8. 세부 도면(행신(2)택지개발지구 : 0.751㎢)



9. 세부 도면(덕이택지개발지구 : 0.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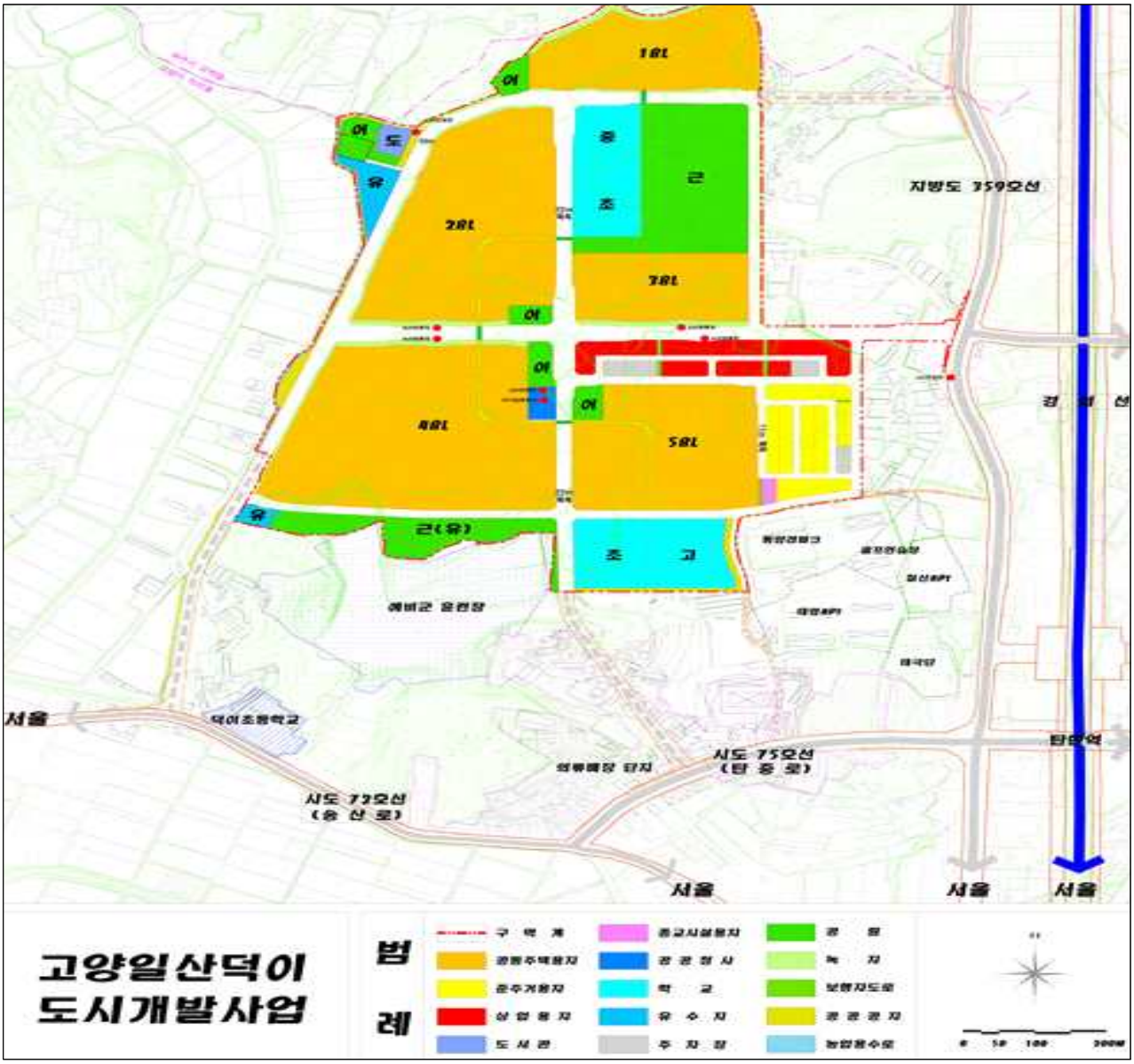

10. 세부 도면(식사택지개발지구 : 0.989㎢)



11. 세부 도면(덕양구 원흥동,도내동,용두동 일원 : 1.287㎢)



12. 세부 도면(풍동 562-8번지외 71필지(애니골): 0.093㎢)



13. 세부 도면



덕양구 화정동 909-1



덕양구 행신동 9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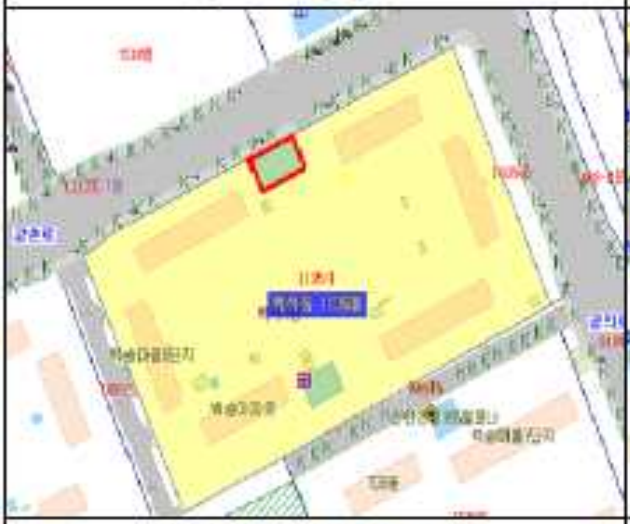

일산동구 백석동 1135



일산동구 마두동 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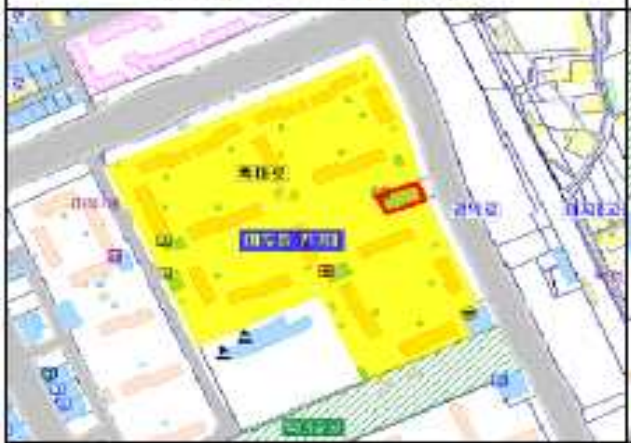

일산동구 마두동 717



일산동구 장항동 875

 1081대 1081-1대 애남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원 1080-6차 공영 1080-5대 IBK 행신동지점 1084-1도 다이소 고양한 1082대 새마을금고 1082-1대 1082-2대 연세정형외과 의원 680-5도 187-2도 187-6전 187-3도 행신동 186-28도 186-23도 186-14도 186-29도 1121도 171-2도 1117도	
행신동 1081-2	

[별지 2]

1.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2. 건물 최상단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예시도



4. 현수막의 표시방법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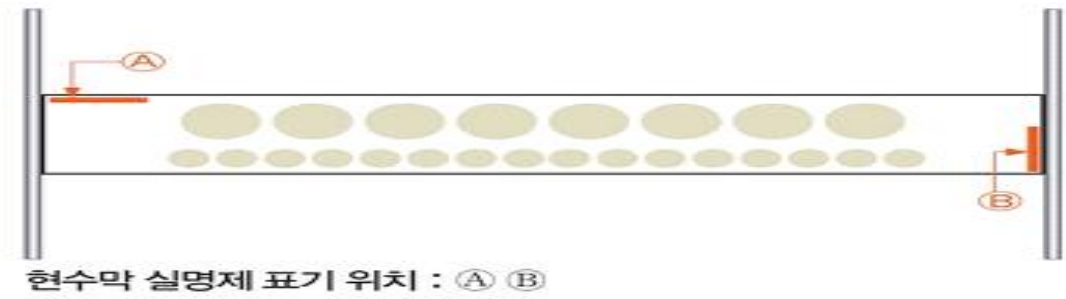

현수막 설명제 표기 위치 : Ⓐ Ⓑ